

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

千九百九十八年十一月二十八日 書名

千九百九十九年一月二十二日 発効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

海洋生物資源の合理的な保存及び管理並びに最適利用の重要性を認識し、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日に東京で書名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を基礎として維持されてきた両国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の伝統を想起し、両国が千九百八十二年十二月十日に作成された海洋法する国際連合条約（以下「国連海洋法条約」という。）の締約国であることに留意し、国連海洋法条約を基礎として、両国の間に新しい漁業秩序を確立し、両国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関係をさらに発展させることを希望して、次のとおり協定した。

第一条

この協定は、日本国の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韓民国の排他的経済水域(以下「協定水域」という。)に適用する。

第二条

各締約国は、互惠の原則に立脚して、この協定及び自国の関係法令に従い、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漁獲を行うことを許可する。

第三条

1. 各締約国は、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の漁獲が認められる魚種、漁獲割当量、漁業区域その他の漁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を毎年決定し、その決定を他方の締約国に書面により通報する。
2. 各締約国は、1の決定を行うに当たり、第十二条の規定に基づいて設置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の協議の結果を尊重し、及び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状態、自国の漁獲能力、相互入会いの状況その他の関係する要因を考慮する。

第四条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1998년 11월 28일 서명

1999년 1월 22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5년 6월 22일 토요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 협정"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기초하여, 양국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3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정되는 어종·어획할당량·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4조

- 1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他方の締約国から前条に規定する決定について書面による通報を受けた後、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ことを希望する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許可証の発給を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に申請する。当該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この協定及び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に従って、この許可証を発給する。
- 2 許可を受けた漁船は、許可証を操舵室の見やすい場所に提示し、及び漁船の標識を明確に表示して操業する。
- 3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許可証の申請及び発給、漁獲実績に関する報告、漁船の標識並びに操業日誌の記載に関する規則を含む手続規則を他方の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に書面により通報する。
- 4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入漁料及び許可証の発給に関する妥当な料金を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

第五条

- 1 各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は、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には、この協定及び漁業に関する他方の締約国の関係法令を遵守する。
- 2 各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が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には、第三条の規定に従い他方の締約国が決定する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及びこの協定の規定を遵守するよう、必要な措置をとる。この措置は、他方の締約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する臨検、停船その他の取締りを含まない。

第六条

- 1 各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漁獲を行うときには、第三条の規定に従い自国が決定する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け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及びこの協定の規定を遵守するよう、国際法に従い、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において必要な措置をとることができる。
- 2 各締約国の権限のある当局は、1の措置として、他方の締約国の漁船及びその乗組員を拿捕し又は抑留した場合には、とられた措置及びその後科された罰について、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他方の締約国に迅速に通報する。
- 3 拿捕又は抑留された漁船及びその乗組員は、適切な担保金又はその提供を保証する書面を提供した後に速やかに釈放される。

4. 各締約国は、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に定め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措置その他の条件を他方の締約国に遅滞なく通報する。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임검·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第七條

1. 各締約國は、次の点を順次に直線より結ぶ線より自國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權的權利を行使するものとし、第二條から前條までの規正の適用上もこの水域を自國の排他的經濟水域とみなす。

- 1) 北緯三十二度五十七・〇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一・一分の点
- 2) 北緯三十二度五十七・五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一・九分の点
- 3) 北緯三十三度一・三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四・〇分の点
- 4) 北緯三十三度八・七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八・三分の点
- 5) 北緯三十三度十三・七分、東經百二十七度五十一・六分の点
- 6) 北緯三十三度十六・七分、東經百二十七度五十二・三分の点
- 7) 北緯三十三度四十五・一分、東經百二十八度二十一・七分の点
- 8) 北緯三十三度十七・四分、東經百二十八度二十五・五分の点
- 9) 北緯三十三度五十四・四分、東經百二十八度二十六・一分の点
- 10) 北緯三十四度八・二分、東經百二十八度四十一・三分の点
- 11) 北緯三十四度十三・〇分、東經百二十八度四十七・六分の点
- 12) 北緯三十四度十八・〇分、東經百二十八度五十二・八分の点
- 13) 北緯三十四度十八・五]分、東經百二十八度五十三・三分の点
- 14) 北緯三十四度二十四・五分、東經百二十八度五十七・三分の点
- 15) 北緯三十四度二十七・六分、東經百二十八度五十九・四分の点
- 16) 北緯三十四度二十九・二分、東經百二十九度〇・二分の点
- 17) 北緯三十四度三十二・一分、東經百二十九度〇・八分の点
- 18) 北緯三十四度三十二・六分、東經百二十九度〇・八分の点
- 19) 北緯三十四度四十三・分、東經百二十九度三・一分の点

20) 北緯三十四度四十九·七分、東經百二十九度十三·〇分の点

21) 北緯三十四度五十·六分、東經百二十九度十三·〇分の点

제7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1154 우리나라와 외국간 어업협정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 22) 北緯三十四度五十二·四分、東經百二十九度十五·八分の点
- 23) 北緯三十四度五十四·三分、東經百二十九度十八·四分の点
- 24) 北緯三十四度五十七·〇分、東經百二十九度二十一·七分の点
- 25) 北緯三十四度五十七·六分、東經百二十九度二十二·六分の点
- 26) 北緯三十四度五十八·六分、東經百二十九度二十五·三分の点
- 27) 北緯三十五度一·二分、東經百二十九度三十二·九分の点
- 28) 北緯三十五度四·一分、東經百二十九度四十·七分の点
- 29) 北緯三十五度六·八分、東經百三十度七·五分の点
- 30) 北緯三十五度七·〇分、東經百三十度十六·四分の点
- 31) 北緯三十五度十八·二分、東經百三十度二十三·三分の点
- 32) 北緯三十五度三十三·七分、東經百三十度三十四·一分の点
- 33) 北緯三十五度四十二·三分、東經百三十度四十二·七分の点
- 34) 北緯三十六度三·八分、東經百三十一度八·三分の点
- 35)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經百三十一度十五·〇九分の点

2. 各締約国は、1の線より他方の締約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しないものとし、第二条から前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この水域を地方の締約国の排他的經濟水域とみなす。

第八条

第二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は、協定水域のうち次の(1)及び(2)の水域には適用しない。

- (1) 次条1に定める水域
- (2) 次条2に定める水域

第九条

1 次の各点を順次に直線により結ぶ線によって囲まれる水域においては、附属書1の2の規定を適用する。

- (1)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經百三十一度十五·九分の点

(2) 北緯三十五度三十三·七五分, 東經百三十一度四十六·五分の点

-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 펴.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 나.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9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 (3) 北緯三十五度五十九·五分，東經百三十二度十三·七分の点
- (4) 北緯三十六度十八·五分，東經百三十二度十三·七分の点
- (5) 北緯三十六度五十六·二分，東經百三十二度十五·八分の点
- (6) 北緯三十六度五十六·二分，東經百三十五度三十·〇分の点
- (7)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經百三十五度三十·〇分の点
- (8) 北緯三十九度五十一·七五分，東經百三十四度十一·五分の点
- (9)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經百三十二度五十九·八分の点
- (10)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經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 (11) 北緯三十七度二十五·五分，東經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 (12) 北緯三十七度八·〇分，東經百三十一度三十四·〇分の点
- (13) 北緯三十六度五十二·〇分，東經百三十一度十·〇分の点
- (14) 北緯三十六度五十二·〇分，東經百三十度二十二·五分の点
- (15)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經百三十度二十二·五分の点
- (16) 北緯三十六度十·〇分，東經百三十一度十五·九分の点

2. 次の各線によって囲まれる水域であって、大韓民国の排他的經濟水域の最南端の緯度線以北の水域においては、附属書 1の3の規定を適用する。

- (1) 北緯三十二度五十七·〇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一·一分の点と北緯三十二度三十四·〇分，東經百二十七度九·〇分の点を読む直線
- (2) 北緯三十二度三十四·〇分，東經百二十七度九·〇分の点と北緯三十一度〇·〇分，東經百二十五度五十一·五分の点を読む直線
- (3) 北緯三十一度〇·〇分，東經百二十五度五十一·五分の点から始まり北緯三十度五十六·〇分，東經百二十五度五十二·〇分の点を通過する直線
- (4) 北緯三十二度五十七·〇分，東經百二十七度四十一·一分の点と北緯三十一度〇分，東經百二十七度十三·〇分の点を読む直線
- (5) 北緯三十一度二十·〇分，東經百二十七度十三·〇分の点から始まり北緯三十一度〇分，東經百二十七度五·〇分の点を通過する直線

-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의 최남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 I 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第十条

兩締約国協定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合理的な保存及び管理並び最適利用に関し相互に協力する。この協力は、当該海洋生物資源の統計学的な情報及び水産業資料の交換を含む

第十一条

- 1 兩締約国は、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航行に関する国際法規の遵守、兩締約国の漁船間の漁業の安全及び秩序の維持並びに海上における兩締約国の漁船間の事故の圓滑かつ迅速な解決のため、適切な措置をとる。
2. 1に掲げる目的のため、兩締約国の関係当局は、できる限り緊密に相互にし、及び協力する。

第十二条

1. 兩締約国は、この協定の目的を効率的に達成するため、日韓漁業共同委員会（以下「委員会」という。）を設置する。
2. 委員会は、兩締約国の政府がそれぞれ任命する一人の代表及び一人の委員で構成されるものとし 必要な場合には、専門家で構成される下部機構を設置することができる。
3. 委員会は、毎年一回、両国で交互に開催するものとし、兩締約国が合意する場合には、臨時に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2の下部機構が設置される場合には、当該下部機構は、委員会の兩締約国の政府の代表の合意により、いつでも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
4. 委員会は、次の事項に関し協議し、協議の結果を兩締約国に勧告する。兩締約国は、委員会の勧告を尊重する
 - (1) 第二条に規定する操業に関する具体的な条件に関する事項
 - (2) 操業の秩序の維持に関する事項
 - (3) 海洋生物資源の実態に関する事項
 - (4) 両国の間の漁業の分野における協力に関する事項
 - (5) 第九条1に定める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
 - (6) その他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事項
5. 委員会は、第九条2に定める水における域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管理に関する事項に関し協議し、決定する。

6. 委員会のすべての勧告及び決定は、兩締約国の政府の代表の合意によつてのみ行う。

제10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11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12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마.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第十三条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適用に関する兩締約国の紛争は、まず、協議によって解決する。
2. 1にいう紛争が協議により解決されない場合には、そのような紛争は、兩締約国の同意により、次に定める手続に従い解決する。

(1)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地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原因が記載された当該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場合においてその要請に応ずる旨の通報を地方の締約国の政府に対して行うときには、当該紛争は当該通報が受領された日から三十日の其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規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三十日以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以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各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構成される仲裁委員に決定のため付託される。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あってもならない。

(2)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1)に定める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った場合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1)に定める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った場合には、仲裁委員会は、いづれかの場合における所定の期間の後三十日以内に各締約国政府が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各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これら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各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って構成される。

(3) 各締約国は自国の政府が任命した仲裁委員又は自国の政府が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した仲裁委員に関する費用及び自国の政府が仲裁に参加する費用をそれぞれ負担する。第三の仲裁委員がその職務を遂行するための費用は、兩締約国が折半して負担する。

(4) 兩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多数決による決定に服する。

第十四条

この協定の附屬書 I 及び附屬書 II は、この協定の不可分の一部を成す。

第十五条

この協定のいかなる規も、漁業に関する事項以外の国際法上の問題に関する各締約国の立場を害するものとみなしてはならない。

第十六条

1164 우리나라와 외국간 어업협정

1. この協定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遠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協定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效力を生ずる。
2. この協定は、その效力発生の日から三年間效力を有する。その後は、いずれの一方の締約国も、この

제13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그 기간후 30일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른다.

제14조

이 협정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5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

協定を終了させる意思を他方の締約国に対して書面により通告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し、この協定は、そのような通告がなされた日から六ヶ月後に終了し、そのようにして終了しない限り引き続き効力を有する。

第十七条

千九百六十五年6月二十二日に東京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漁業に関する協定は、この協定の効力発生の日効力を失う。

以上の証拠として下各は、各自の政府から正当な委任を受け、この協定に署名した。
千九百九十八年 十一月 二十八日に鹿児島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及び韓国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

大韓民国のために

日本国のために

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17조

1965년 6월 22일 도쿄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附属書 I

1. 兩締約国は、排他的經濟水域の早急な境界画定のため、誠意を持って交渉を継続する。
2. 兩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1に定める水域で海洋生物資源の維持が過度な開発により脅か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次の規定に従い協力する。

(1) 兩締約国は、この水域で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を 連用しない。

(2) 兩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十二条の規定に基づき設置される日韓漁業共同委員会(以下「委員 会」という。)における協議の結果による勧告を尊重して、この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 及び漁業種類別の漁船の最高操業集数を含む適切な管理に必要な措置を、自国の国民及び漁 船に対してとる。

(3) 兩締約国は、この水域で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実施している措置を他方の締約国に通 報するものとし、兩締約国は、委員会の自国の政府の代表を(2)の勧告のための協議に参加させ るに当たってその通報された内容に十分配慮する。

(4) 兩締約国は、この水域で漁獲を行う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よる漁業種類別及び魚種別の漁獲量 その他の関連情報を他方の締約国に提供する。

(5) 一方の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この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が(2)の規定 に従い実施する措置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及び関連状況を他方の締 約国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を取り締まるに当たり、そ の通報と関連する事実を確認して必要な措置をとった後、その結果を当該一方の締約国に通報す る。

3. 兩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2に定めた水域で海洋生物資源の維持が過度な開発により脅かされないようにするため、次の規定に従い協力する。

(1)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を 適用しない。

(2) 各締約国は、委員会の決定に従い、この水域における海洋生物資源の保存及び漁業種類別の漁 船の最高操業集数を含む適切な管理に必要な措置を、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とる。

(3)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それぞれ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実施している措置を他方の締約国に通 報するものとし、兩締約国は、委員会の自国の政府の代表を(2)の決定のための協議に参加させ るに当たってその通報された内容に十分配慮する。

(4) 各締約国は、この水域で漁獲を行う自国の国民及び漁船による漁業種類別及び魚種別

の漁獲量 その他の関連情報を他方の締約国に提供する。

부속서 I

1. 양 체약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 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 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를 타방 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계약국에 제공한다.

(5) 一方の締約国は、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がこの水域において他方の締約国が(2)の規定に従い実施する措置に違反しているこ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その事実及び関連状況を他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当該他方の締約国は、自国の国民及び漁船を取り締まるに当たり、その通報と関連する事実を確認して必要な措置をとった後、その結果を当該一方の締約国に通報する。

附属書Ⅱ

1. 各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1及び2に定めた水域より自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するものとし、この協定の第二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この水域を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とみなす。

2. 各締約国は、この協定の第九条1及び2に定める水域より他方の締約国側の協定水域において漁業に関する主権的権利を行使しないものとし、この協定の第二条から第六条までの規定の適用上もこの水域を自国の排他的経済水域とみなす。

3. 1及び2の規定は、次の各点を順次に直線により結ぶ線より北面側の水域の一部の協定水域には適用しない。また、各締約国は、この水域においては、漁業に関する自国の関係法令を他方の締約国の国民及び漁船に対して適用しない。

- (1)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緯百三十一度四十・〇分の点
- (2) 北緯三十八度三十七・〇分、東緯百三十二度五十九・八分の点
- (3) 北緯三十九度五十一・七五分、東緯百三十四度十一・五分の点

다.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뭇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부 속 서 II

1.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자국측의 협정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2.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을 기준으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이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의 북서쪽 수역의 일부 협정수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나.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다.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